

공청회 공고

2026년 10월 6일 · 오후 2시 · 202 C St., 12층

일반 시민은 시의회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습니다. 본 회의는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며, 시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스트리밍됩니다. 공개 의견은 현장, 전화 또는 Zoom 웨비나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을 통한 회의 웨비나 참여 링크:
sandiego.gov/councilmtg
- 전화 참여: **1-669-254-5252**
- 입력 요청 시 웨비나 ID 입력: **160 943 0466**

자세한 내용은 **sandiego.gov/cc**를 방문해 주십시오.

이 문서는 다음 언어로 제공됩니다

العَرَبِيَّةُ, 官話/官, 한국어,
فارسی, دری, *af Soomaali*,
Español, *Tagalog*,
Tiếng Việt



수도 요금에 관한 중요 정보

본 통지는 캘리포니아 헌법 제13D조(일명 "발의안 218")에 따라 샌디에이고 시 공공유틸리티국에서 귀하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발의안 218의 규정에 따라, 시 당국은 수도 서비스 등 부동산 관련 수수료의 변경 제안 사항을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시의회가 상기에 명시된 시간, 날짜 및 장소에서 시의 수도 서비스 요금 및 부과금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심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을 알리는 통지입니다. 조정안이 승인되면 2027년 1월부터 발행되는 청구서에 처음 반영됩니다. 모든 시민은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모든 부동산 소유자 및 등록된 고객은 제안된 요금 변경안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이의 제기서는 2026년 10월 6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필지당 한 건의 이의 제기만 허용됩니다.

모든 서면 이의 제기는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또한, 상기에 명시된 날짜와 시간에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sandiego.gov/rate-adjustments



서면 이의 제기서는 봉투에 넣어 **City Clerk, 202 C St., MS 2P, San Diego, CA 92101**로 우편 제출하거나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본인 _____ 은(는) 제안된

요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필지 번호(APN) 또는 주소: _____

서명: _____

공청회 개최 안내 2026년 10월 6일 오후 2시

장소: 시의회 회의실
(Council Chambers), 202 C St.,
12th Floor, San Diego, CA 92101

법원 명령에 따른 수도 요금 조정안

샌디에이고시는 수도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Patz 외 원고들이 샌디에이고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Patz, et al. v. City of San Diego, 113 Cal. App. 5th 225 (2025))*에서 시의 현행 요금 체계가 주민발의안 제218호(Proposition 218)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부합하는 요금을 책정하도록 시에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시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상수도 사용량 요금을 새로

마련해 시행하고, 사용량 요금 산정 방식 변경에 맞춰 상수도 월별 기본요금과 소방용 급수관 월별 기본요금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된 요금의 산정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샌디에이고시의 최신 서비스 원가 조사 보고서와 「2025년 수도 서비스 원가 조사 수정

메모」(Stantec Mem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자료는 sandiego.gov/rate-adjustments를 방문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원가 조사 보고서의 우편 사본을 요청하시려면 requestreport@sandiego.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시십시오.

공청회 정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 요금 조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됩니다.

귀하는 제안된 요금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면 이의 제기서에는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내용, 필지 번호 (APN) 또는 부동산 주소, 그리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기부상 부동산 소유자 또는 등록 고객의 이름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필지 또는 주소당 한 건의 이의 제기만 인정됩니다. 전자 형식으로 제출한 이의 제기(이메일, 소셜 미디어 메시지 등)는 주정부 요건에 따른 서면 이의 제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의회는 공청회에서 제안된 요금 인상안에 관한 구두 진술을 듣고 제출된 서면 자료를 검토합니다. 시의회는 심의를 위해 제출된 구두 진술과 서면 자료를 반영하여 제안된 요금 인상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의 주민발의안 제218호 이의 제기 집계 절차에서는 서면 이의 제기만 인정됩니다. 서면 이의 제기는 공청회 종료 전까지 공청회 현장에서 직접 또는 **City Clerk, 202 C St., MS 2P, San Diego, CA 92101**로 우편 제출되어야 합니다.

본 공청회는 City TV에서 방영되며, 시 웹사이트(sandiego.gov/communications/citytv)에서도 동시 생중계됩니다. 시의회 회의 참석 및 공개 발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sandiego.gov/cc)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구두 의견은 시의회가 검토하지만, 서면 이의 제기도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공식 이의 제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또는 공과금 납부 책임이 있는 세입자의 과반수가 공청회 종료 전에 서면 이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의회는 제안된 요금 조정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심의하고 채택할 수 있습니다. 채택될 경우, 이 공고의 표에 제시된 요금 조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의 제기 또는 반대 의견 제출 방법

공청회에서 발언하는 것 외에도, 캘리포니아주법에는 서면 이의 제기와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된 바와 같이, 반대 의견 제출과 이의 제기는 서로 다른 목적과 절차를 가진 별개의 과정입니다. 이의 제기 절차는 시가 제안된 요금과 부과금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반대 의견 제출 절차는 해당 요금과 부과금이 채택될 경우 요금 납부자가 향후 법적 절차에서 이를 다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 의견에 대한 답변은 공청회 전에 공식 기록에 포함됩니다. 두 절차 모두 진행하실 수 있지만, 각각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반대 의견 제출
목적	제안된 요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절차	요금 신설, 인상 또는 연장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D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고객 또는 부동산 소유주의 법적 근거를 시에 통지
근거	어떤 이유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힐 필요는 없음	반대 의견 제출자는 제안된 요금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명시해야 함
효력	해당 필지 소유주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하면 제안된 요금은 채택되지 않음	향후 법적 절차에서 요금 인상을 다룰 권리를 보전함 서면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요금을 다룰 권리를 상실함
마감일	2026년 10월 6일 공청회 종료 전까지 접수 완료	2026년 9월 14일까지 접수 완료
제출 양식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본 공고 마지막 페이지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가능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만 제출 가능 본 공고에 첨부된 양식으로는 제출 불가 별도 제출 필수
필수 기재 사항	부동산 소유주 또는 요금 납부자의 성명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특정 요금 서명 주소 또는 APN 번호	제안된 요금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D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이유 명시 부동산 소유주 또는 요금 납부자의 성명 기관에서 서면 답변을 보내기 위한 연락처 정보
제한 사항	요금 납부자 또는 부동산 소유주가 제출해야 함 필지당 이의 제기서 한 건만 집계됨 이메일로 제출한 이의 제기는 집계되지 않음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 불가 2026년 9월 14일까지 접수 완료
제출처	Office of the City Clerk - Lobby 202 C St., MS 2P San Diego, CA 92101	Public Utilities Department Attn: Rate Objections 9192 Topaz Way San Diego, CA 92123

모든 서면 반대 의견은 정해진 제출 기간 내에 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법적 절차에서 해당 요금 또는 부과금을 다룰 권리를 상실합니다. 정부법 제53759조에 따라, 신규·인상·연장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이의 제기는 120일의 제소 시효가 적용됩니다. 제안된 요금이나 부과를 채택한 결의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모든 사법적 조치 또는 절차는, 해당 결의안의 시행일 또는 최종 통과·채택·승인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수도 요금 조정안

법원은 Patz 외 원고들이 샌디에이고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Patz, et al. v. City of San Diego, 113 Cal. App. 5th 225 (2025))에서 시의 현행 요금 체계가 주민발의안 제218호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를 마련하도록 시에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시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는 단일 상수도 사용량 요금을 마련해 시행하고, 사용량 요금 산정 방식 변경에 맞춰 상수도 월별 기본요금과 소방용 급수관 월별 기본요금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된 요금의 산정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의 최신 서비스 원가 조사 보고서 및 「2025년 수도 서비스 원가 조사 수정 메모」(Stantec Memo)(sandiego.gov/rate-adjustmen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표에는 작년 시의회에서 승인되어 2027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기존 채택 요금과, 본 법원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본 서비스 원가 조사에 따른 제안 요금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월별 기본요금		
계량기 크기	기존 승인 요금	조정 제안 요금
	2027년 1월 1일 요금	2027년 1월 1일 요금
5/8", 3/4"	\$40.69	\$40.97
1"	\$65.08	\$65.43
1.5"	\$126.07	\$126.58
2"	\$199.26	\$199.97
3"	\$455.41	\$456.79
4"	\$760.34	\$762.54
6"	\$1,760.53	\$1,765.40
8"	\$2,699.74	\$2,707.11
10"	\$5,127.04	\$5,140.88
12"	\$6,468.79	\$6,486.18
16"	\$9,518.17	\$9,543.67

소방용 급수관 월별 기본요금		
계량기 크기	기존 승인 요금	조정 제안 요금
	2027년 1월 1일 사설 소방용 급수관 요금	2027년 1월 1일 사설 소방용 급수관 요금
1"	\$4.60	\$4.84
1.5"	\$5.56	\$5.90
2"	\$7.22	\$7.72
3"	\$13.17	\$14.27
4"	\$23.44	\$25.57
6"	\$60.30	\$66.14
8"	\$123.88	\$136.10
10"	\$219.52	\$241.35
12"	\$352.07	\$387.20
16"	\$745.63	\$820.28
20"	\$1,337.64	\$1,471.74

상수도 사용량 요금				
고객 등급			기존 승인 요금	조정 제안 요금
		격월 구간별 할당량(HCF)	2027년 1월 1일 사용량 요율(\$/HCF)	2027년 1월 1일 사용량 요율(\$/HCF)
단독 주택	1구간 (\$/HCF)	0~10	\$9.75	11.09
	2구간 (\$/HCF)	11~22	\$10.88	
	3구간 (\$/HCF)	22 초과	\$13.62	
다가구 주택 (\$/HCF)			\$11.41	
상업/산업/시 외 지역 (\$/HCF)			\$10.72	
관개용 (\$/HCF)			\$12.08	
임시 건설용 (\$/HCF)			\$12.46	

참고: 시는 대부분의 단독 주택 고객에게 격월 단위로 요금을 청구합니다. 즉, 해당 고객의 청구서에는 두 달치 수도 요금이 포함됩니다.